

# 최대주주 변경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어라운드자산운용  
(영문명) : Around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 [www.aroundasst.co.kr](http://www.aroundasst.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12 M빌딩 401호  
(전    화) : 02-515-5392

대    표    이    사 : 김    도    숙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도숙                (전    화) 02-515-5392

작    성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정동례                (전    화) 02-515-5392

제출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하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7호)

## 최대주주 변경

「금융투자업 규정」 제3-70조 제1항에 의거 최대주주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내용	변경전	최대주주명	탁무권
		소유주식수(주)	42,000
		소유비율(%)	17.36
	변경후	최대주주명	강을생
		소유주식수(주)	40,000
		소유비율(%)	16.53
2. 변경사유		지분 양수도계약	
3. 지분인수목적		단순 투자	
- 인수자금 조달방법		현금	
-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해당없음	
4. 변경일자		2026.01.29	
5. 변경확인일자		2026.01.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김도숙	최대주주	107,000	44.21	107,000	44.21	
탁무권	최대주주와 관계없음	42,000	17.36	2,000	0.83	
강을생	최대주주와 관계없음	0	0	40,000	16.53	
황재웅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0,000	16.53	40,000	16.53	최대주주의 자녀
황원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2,000	9.09	22,000	9.09	최대주주 시누이의 배우자
김보미	최대주주와 관계없음	20,000	8.26	20,000	8.26	
김숙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500	2.69	6,500	2.69	최대주주의 시모
황금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500	1.03	2,500	1.03	최대주주의 시누이
황학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000	0.83	2,000	0.83	최대주주의 배우자

### <기재상의 주의>

- 주1)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최대주주명”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
- 주3) “소유주식수”는 변경전 · 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주4) “소유비율”은 변경전 · 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 주5)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3. 인수목적(인수자금 조달방법, 인수후 임원 선 · 해임 계획 포함)”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 한다.
- 주6) 【세부변경내역】은 변경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변경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
- 주7) “관계”는 변경전 최대주주,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변경전 · 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  
예시)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 주8)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
- 주9)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